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1995. 5.30.제정
1996.10. 9.개정
2007. 1.18.개정
2008. 4. 2.개정
2008.10.12.개정
2011.06.09.개정
2012. 2. 2.개정
2012.10.11.개정
2013. 4. 2.개정
2015. 1.12.개정
2015.12.14.개정
2017. 7.28.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국가대표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의2에 의거 대한체육회 또는 본 협회가 국제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국가대표상비군선수, 청소년대표선수, 청소년상비군선수, 꿈나무선수 선발 방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국가대표 선발 및 승인) ①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는 본 협회에서 선발하되, 본 협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는다.
②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본 협회에 의하여 볼링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선수, 지도자는 본 협회 선발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종목별 국가대표 자격을 갖는다.

제 5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6.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에서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국가대표 훈련비 횡령)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 6 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지 도 자

제 7 조 (선발기준) ① 대한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지도자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인격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지도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한다.

1. 국가대표지도자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독은 볼링 지도 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코치는 볼링 지도 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아시아경기대회 메달리스트의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될 수 있다.
2. 제1항의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2017.07.28개정)

나. 본 협회 코치 2급 이상 자격 취득자

② 트레이너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및 지도경력을 반드시 요하지 않으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우대한다. (2017.07.28.개정)

제 8 조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방법)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② 선발과정 및 결과는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등 선발근거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용 및 재임용 시, 해당 지도자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임기 및 역할)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선수관리를 위해 최소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은 강화훈련기간 이상 임기(계약기간)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 감독은 코치 및 선수 선발 선임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감독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무)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훈련 및 관리
2.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3. 국가대표 훈련대상 선수선발 참여
4.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 건의
5. 국가대표 훈련 참가자의 해외전지훈연 및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
6.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
7.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 감독
8. 기타 경기력향상에 관련되는 사항

제3장 선 수

제 11 조 (국가대표선발) ①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는 본 협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본 협회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선발하고, 본 협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본 협회가 선발한 국가대표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본 협회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선발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추천 후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2 조 (선발절차) ① 본 협회가 사전에 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일정 등 세부내용은 본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국가대표 선발기준은 최소한 국가대표 선발일 6개월 전에 확정하여 본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선발기준) ① 해당 연도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기준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소속팀으로부터의 차출 시 대표선수 원 소속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선발인원) 경기 규정상의 엔트리 범위 내에서 남녀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추가 선수가 필요한 경우는 훈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제 15조 (국가대표선수 선발 방법)

1. 예선전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정한 준결승전 진출 대상자 선정 인원수 범위내에서 기득권자를 제외한 인원수를 시도지부별로 등록선수수(80%), 공인 레인보유수(20%)에 따라 선발선수수를 시도별로 배정한다.

가. 게 임 수 : 12게임 이상

나. 경기일수 : 2일 이상

2. 준결승전

가. 준결승전 진출 자격자

1)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일반부 마스터즈 2,3위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1,2,3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개인종합 1,2,3위

2)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볼링선수권대회

일반부 마스터즈 2,3위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1,2,3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개인종합 1,2,3위

3)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학생볼링대회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1,2,3위

고등부, 대학부 개인종합 1,2,3위

4)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일반부 마스터즈 2,3위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1,2,3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개인종합 1,2,3위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1,2,3위

고등부, 대학부 개인종합 1,2,3위

6)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

일반부 마스터즈 2,3위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1,2,3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개인종합 1,2,3위

7) 한국실업볼링연회장기 전국실업볼링대회

일반부 마스터즈 2,3위

일반부 개인종합 1,2,3위

8) 전국체육대회

일반부 마스터즈 2,3위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1,2,3위

9) KBS배 전국볼링대회

일반부 마스터즈 1,2,3위

10) 대구광역시장기 전국볼링대회

고등부, 대학부 개인종합 1,2,3위

11) 전년도 청소년대표선수, 청소년대표상비군선수

12) 전년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13) 당해 연도 전국규모 지정대회의

개인전, 2인조전, 3인조전, 4인조전, 5인조전 1-3위 입상자 중

남자평균점수 215점 이상자(고/대/일반)

여자평균점수 210점 이상자(고/대/일반)

14) 전국시도지부 예선전에서 선발된 선수

15) 1)~13)항 해당자일지라도 지정된 대회 참가수가 일반부 4개, 대학부 3개, 고등부 3개, 중등부 3개 대회(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 볼링선수권대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 볼링대회를 포함) 이상이 되어야 함

나. 준결승전 게임 수 및 경기일수

1) 게 임 수 : 45게임 이상

2) 경기일수 : 5일 이상

다. 준결승전 선발인원

준결승전의 선발인원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정한다.

3. 결승전

가. 결승전 진출 자격자

1)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일반부 마스터즈 우승자

2)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볼링선수권대회

일반부 마스터즈 우승자

3)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일반부 마스터즈 우승자

4)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단체대항 볼링대회

일반부 마스터즈 우승자

5) 전국체육대회

일반부 마스터즈 우승자

6)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전국실업볼링대회

일반부 마스터즈 우승자

7) 전년도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 후보선수

8) 1)~7)항 해당자일지라도 지정된 대회 참가수가 일반부 4개, 대학부 3개, 고등부 3개 이상이 되어야 함

나. 결승전 게임 수 및 경기일수

1) 경기일수 : 6일 이상

2) 게 임 수 : 54게임 이상 (1일 9게임 기준)

다. 결승전 선발인원 (남녀 동일)

1) 남녀 각 1위-12위 선수를 최종평가전 참가선수로 결정

2) 남녀 각 13위-22위 선수를 국가대표상비군선수로 결정

라. 국가대표선수 선발전 최종평가전(남녀 동일)

1) 평가전 참가대상 (남녀 각 12명)

- 결승전에서 선발된 남녀 각 12명

2) 선발내용

- 남녀 각 12명이 평가전을 실시하여 1-8위 선수를 국가대표선수로 결정하고 9-12위 선수를 국가대표후보선수로 결정

3) 선발방법

- 세부평가방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

마. 국제대회 파견선수 선발

1) 국제대회 파견을 위한 국가대표선수는 해당 국제대회 파견 평가전 결과에 따라 엔트리수 내에서 결정한다.

2) 파견선수 중 경기력저하, 부상 등의 이유로 부득이 입촌훈련, 국제대회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의될 시 국가대표후보 중에서 차순위자가 자격을 계승한다,

제 16 조 (청소년 대표선수 선발방법)

1. 예선전

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준결승전 진출대상자로 결정된 인원수 범위 안에서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여 기득권을 확보한 자를 제외한 인원수를 시도지부별로 등록선수(80%), 공인레인보유수(20%)의 비율에 따라 선수 선발수를 시도별로 배정한다.

나. 게 임 수 : 12게임 이상

다. 경기일수 : 2일 이상

2. 준결승전

가. 준결승전 진출 자격자

1)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중등부 개인종합 1,2,3위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2,3위

2)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볼링선수권대회

중등부 개인종합 1,2,3위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2,3위

3)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학생볼링대회

중등부 개인종합 1,2,3위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2,3위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

중등부 개인종합 1,2,3위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2,3위

5)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중등부 개인종합 1,2,3위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2,3위

6)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

중등부 개인종합 1,2,3위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2,3위

7)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2,3위

8) KBS 전국우수고교 볼링대회 고등부 마스터즈 1,2,3위

9) 대구광역시장기 전국볼링대회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1,2,3위

※ 일반부의 청소년연령 대상자도 동일조건 부여

10) 전년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11) 전년도 청소년대표 상비군선수

12) 협회에서 승인한 시도지부 볼링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13) 한국실업볼링연맹 추천 3명(한국실업볼링연맹 소속 선수)

14) 시도협회에서 실시한 예선전에서 선발된 인원

15) 1)~13)항 해당자일지라도 지정된 대회 참가수가 일반부 4개, 대학부 3개, 고등부 3개, 중등부 3개 대회(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 볼링선수권대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 볼링대회를 포함) 이상이 되어야 함

나. 준결승전 게임 수 및 경기일수

1) 경기일수 : 4일이상

2) 게 임 수 : 32게임 이상

다. 준결승전 선발인원

준결승전의 선발인원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정한다.

3. 결승전

가. 결승전 진출자격자

1)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우승자

2)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볼링선수권대회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우승자

3)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학생볼링대회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우승자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우승자

5)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우승자

6)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우승자

7)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대학부 마스터즈 우승자

8) 전년도 청소년대표선수

9) 현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국가대표상비군선수

10) 1)~9)항 해당자일지라도 지정된 대회 참가수가 일반부 4개, 대학부 3개, 고등부 3개, 중등부 3개 대회(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 볼링선수권대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 볼링대회를 포함) 이상이 되어야 함

※ 일반부의 청소년연령 대상자도 동일조건 부여

나. 결승전 게임 수 및 경기일수

1) 게 임 수 : 48게임 이상

2) 경기일수 : 6일

다. 결승전 선발인원 (남녀 동일)

1) 청소년 대표선수 4명

2) 청소년대표 후보선수 10명

라. 국제대회 파견선수 선발

1) 청소년대표 1위-4위 선수를 중요국제대회 파견선수로 결정

2) 경기력저하, 부상 등의 이유로 부득이 국제대회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결의될 시 청소년대표후보선수 중에서 차순위자가 자격을 승계한다.

제 17 조 (꿈나무 선수 선발) 경기기록 및 소양 자질을 검토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우수선수 양성을 위한 체계적 훈련을 실시한다.

제4장 보 칙

제 18 조 (불공정 행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로 징계를 받은 자는 국가대표 강화훈련에서 제외된다.

제 19 조 (국가대표선발 규정 제 · 개정) ① 본 협회에서 제·개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제·개정 후 즉시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국가대표선발 규정의 개정시기) ① 확정된 본 협회 국가대표선발 규정의 개정은 규정 제·개정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개정할 수 있으며, 본 협회에서 이사회 의결, 확정 후 개정 내용을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만,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1년 이내에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자료의 보관) 국가대표 선발기준,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분석지 및 회의록 등)관련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 22 조 (강화훈련) 국가대표 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199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1996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07년 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08년 10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11년 6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12년 2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13년 4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15년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17년 7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5조(결격사유)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행위로 형벌 또는 징계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